문화통치시기 일제의 기만적인《참정권》 실시에 대한 연구

장 경 일

1. 서 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무단통치〉의 총검우에 〈문화통치〉의 비단보자기를 씌워놓고 〈중추원〉에 친일파들을 몇명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조선사람의 정치참여를 장려하는척 하면서 〈민의창달〉의 허울밑에 조선글로 된 신문, 잡지를 몇종 발간하도록 허가해주고는 마치 그 무슨 복지시대라도 온것처럼 요란스럽게 떠들었지만 우리 민족은 그런 속임수를 용납하지 않고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계속하였다.》(《김일성전집》 제95권 132폐지)

조선민족앞에 천추만대를 두고도 씻을수 없는 죄악을 저지른 일본제국주의가 패망한 때로부터 70여년이라는 긴긴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지난날 일제가 조선인민앞에 저지른 그 수많은 죄행들은 세월의 흐름속에서 희미해지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고있으며 전체 조선민족의 치솟는 분노를 불러일으키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일본반동들은 죄악에 찬 침략력사를 성근하게 반성하고 사죄할 대신 그를 합리화하기 위해 파렴치한 력사외곡책동에 매여달리면서 뻔뻔스럽게 놀아대고있다.

40여년간에 걸치는 일제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사의 갈피들가운데는 3.1인민봉기후 무단적포악성에 일본식교활성이 결합된 문화통치의 비단보자기로 감싸고 조선인민의 그 무슨 《참정권》실시를 떠들며 감행된 기만적인 책동도 들어있다.

지난 시기 일제의 조선침략사를 취급하는 일부 도서들과 론문들에서 문화통치의 교활성에 대하여 서술하면서 《참정권》실시의 기만적인 내용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언급되였다.

이 론문에서는 근대시기에 참정권문제의 출현에 대한 리해, 일제가 문화통치시기에 《참정권》실시문제를 들고 나온 목적과 그에 대한 일제통치층의 립장, 그 실시과정을 단계 별로 나누어 종합적으로 취급하려고 한다. 이를 통하여 문화통치의 허울좋은 간판밑에 조선사람들의 정치참가를 장려하는척 하면서 일제가 벌린 《참정권》실시의 기만성에 대하여 날날이 밝히려고 한다.

2. 본 론

2. 1. 참정권문제의 출현에 대한 일반적리해

고유한 의미에서 참정권이라는 말의 뜻을 해석해보면 정치활동에 참가할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참정권사상은 근대시기 봉건절대군주제에 대한 불만을 품은 부르죠아지들의 정치적

요구를 반영하여 력사무대에 등장하였다. 근대정치사에서 국민참정권사상이라고 할 때 그것은 백성들이 정치에 참가하여 정부를 감독하고 정치에 관여하는것이 그들의 권리이 며 의무라고 보는 견해였다.

17세기 네데를란드의 철학자인 스피노자는 국가정치에서 절대군주제를 배격하면서 도 민중으로부터 선거된 사람들이 보좌하는 군주정치가 리상적이라고 하면서 높은 세금 을 내는 시민권의 소유자들 다시말하여 부르죠아지들이 정치에 참가하여야 한다는 참정 권리론을 내놓았다.

이에 기초하여 근대시기 자본주의국가들에서는 선택된 《국민》들 즉 부르죠아지들이 국가권력기구에 들어가서 국가정치활동에 참가할것을 주장하는 참정권사상이 나오게 되 였으며 그것은 선거할 권리, 선거받을 권리, 국민투표권, 국민심사권 및 공무원이나 배심 원으로 되는 권리를 의미하였다.

근대시기 자본주의나라들에서의 참정권사상의 발생은 봉건절대군주제를 반대하고 국 가사회생활에서 정치적권리를 행사하려는 인민대중의 지향과 공통되였다는 점에서는 진 보적인 측면을 가지고있었지만 그 실천에서는 철저히 부르죠아지들의 정권장악을 위한데 복무하였다. 결국 이것은 부르죠아지들이 국민이라는 간판밑에 자본주의사회에서 정권을 저들의 손에 틀어쥐고 좌우지하는데 필요한것이였다.

착취계급인 자본가들이 정권을 독차지하고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극소수의 특권층 들만이 정치적권리를 독점하고 절대다수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은 정치밖에서 무권리만을 강요당하기마련이다. 때문에 자본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이 바라는 진정한 정치적자유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참정권이란 결코 존재할수 없는것이다.

자본의 예속을 반대하고 참정권을 요구하는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혁명 적진출이 강화되자 독점자본가들은 로동귀족들을 길러내고 그들에게 높은 임금과 함께 국가기관, 로동조합, 공공기관의 직무를 주어 마치도 그 어떤 정치적권리를 보장해주는것 처럼 기만하면서 근로대중의 계급의식을 마비시키려고 책동하였다.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식민지로 강점당하였던 나라들에서도 역시 참정권문제는 식 민지종주국에 대한 식민지약소민족들의 불만과 민족해방투쟁을 약화시키기 위한 수단으 로 리용되였지 진정한 의미에서 피지배민족의 정치참가를 실현한 전례는 찾아볼수 없다.

제국주의자들이 저들의 식민지로 있던 일부 나라들에서 형식적으로나마 실시한 《참 정권》은 크게 두가지 형식을 떠고있었는데 그 하나는 식민지종주국의 의회에 식민지나라 의 대표들이 직접 참가하는 형식이고 다른 하나는 식민지총독밑에 자치의회를 두는 방식 이였다.

실례로 프랑스는 저들의 식민지인 알제리에서 선출된 대표들을 프랑스의회에 참가시 키였으며 영국은 인디아총독의 밑에 식민지자치의회를 두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참정권》실시는 어디까지나 식민지나라들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해당 나라와 인민들을 기만하고 종주국의 식민지통치 에 식민지나라 인민들을 순종시키도록 하기 위한데 목적을 두고있었다.

설사 명색상으로는 자치권을 가지고있다고 하여도 정치적권리가 어느 정도로 실혀되 였는가 하는 문제에서 구식민지시대의 식민지의회들은 모두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식 민지총독들에 의해 그 권한이 제한되여있는것이 일반적이였다. 이런 의미에서 제국주의 자들이 식민지나라들에 선사한 《자치》라는것은 식민지나라들에서의 민족해방투쟁을 저지 시키고 저들의 통치에 순응하는 식민지주구들을 끌어당기는것을 통하여 민족적독립을 위한 투쟁을 거세하기 위한 분렬통치의 보다 교묘한 하나의 방법에 지나지 않는것이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근대시기 독립협회의 지식인들속에서 국민참정권사상이 나오게 되 였으며 그것은 봉건사회의 정치적압박과 무권리에서 벗어나 국가정치의 주인이 되려는 광범한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한것으로 하여 일정하게 긍정적인 의의를 가지였다.

참정권사상을 주장한 독립협회는 1896년 7월 조선봉건왕조의 수도였던 한성(서울)에서 애국적인 지식인들에 의하여 창설되였다.

독립협회는 인민들을 주권자로 본데로부터 그들의 정치참가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 그들은 정부를 감독하고 정치에 관여할 권리는 백성의 첫째가는 권리인 동시에 의무라고 하였다.

독립협회는 《독립신문》을 통하여 만일 정부가 임금과 백성을 사랑하는 정부일 때에는 그 정부가 제정하는 법률과 명령을 조금도 어김없이 시행하는것이 백성의 의무이지만 정부가 임금과 백성을 사랑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를 교체하는것이 백성의 직무에 속한다고 주장하였다.

독립협회는 인민들의 정치참가가 집회나 의회의 설립을 통하여 실현될수 있다고 보았다. 근대시기에 독립협회가 주관한 만민공동회운동이 연설이나 하고 왕에게 상소문을 올리는것과 같은 집회투쟁에 국한되게 된것은 바로 그들이 집회를 통하여 국가정치에 대한 비판과 감독을 실현할수 있다고 보았기때문이였다.

독립협회의 일부 급진적인 사람들은 의회의 설립이야말로 백성들이 정치에 참가할수 있게 하는 방도라고 보았다.

의회설립에 대한 독립협회의 주장은 그 주요성원이였던 리상재가 주관하여 작성하였는데 1898년 10월에 봉건정부에 제기한 《중추원개편안》에 그대로 반영되여있다. 《중추원개편안》에서는 의회가 황제의 칙령과 의정부의 상주안, 일체 법률의 제정 및 페기권한을 가지게 하였을뿐아니라 중추원과 정부사이에 의견불일치가 조성되는 경우 반드시 합의를 거쳐 실행하게 하여 정부의 독단을 차단하는 정부감독권을 가지게 함으로써 근대적인 립법기관을 갖출것을 예견하였다.

그러나 독립협회가 주장한 《국민참정권》사상은 그 계급적성격에 있어서 당시 우리 나라에서 자라나던 민족부르죠아지들의 요구를 반영한것으로서 간과할수 없는 계급적제 한성을 내포하고있었다. 그것은 본질에 있어서 근대화의 길에 들어선 자본주의나라들에 서 흔히 볼수 있는 부르죠아적인 《평등》과 《자유》에 기초한 부르죠아민권사상의 테두리 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진정으로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참다운 민주주의를 의미하는것은 아니였다.

즉 민족부르죠아지들이 부르짖던 《참정권》은 본질에 있어서는 근로인민대중을 국가 정치의 주인으로 내세우기 위한것이 아니라 선택된 《국민》인 부르죠아지들의 정권을 세 우자는데 그 목적을 두고있었다.

2. 2. 문화통치시기 《참정권》실시문제를 론하게 된 목적과 그에 대한 일제통치층의 립장

중세기적공포정치로 특징지어지는 무단통치시기에는 조선인민에 의한 그 어떤 형식 적인 《참정권》문제도 애당초 론의조차 되지 않았다.

이 시기 일제는 가장 로골적인 군사적폭압에 의거한 야만적인 식민지통치방식인

무단통치로 조선인민의 정치적자유와 생존권을 말살하며 경제적수탈과 지어는 사상문화 생활을 유린하는데서까지 총칼의 힘과 헌병경찰의 무제한한 강권에 전적으로 의거하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조선인민에 의한 그 무슨 《참정권》문제가 론의된다는것은 도저히 생각 조차 할수 없는것이였다.

구체적으로 말하여 1910년 《한일합병조약》이 날조된 후 조선인민의 법적지위는 일 제가 패망할 때까지 의무에 있어서는 일본인으로 되여야 하였지만 권리에 있어서는 일본 인이 아니라 노예와 같이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비참한 처지에 있었다.

일제침략자들에 의하여 주권국가의 상징으로 되는 그 어떤 자그마한 징표도 전혀 찾 아볼수 없고 일본령토의 한 부분처럼 되여버린 조선에서 조선인민의 정치적지위에 대한 일제의 태도는 《조선사람은 일본법률에 복종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죽어야 한다.》고 뇌까 린 초대조선총독 데라우찌의 망발을 통하여 충분히 알수 있다.

이로부터 일제는 조선에 대한 저들의 식민지통치에서 철저한 권력분할금지정책을 실 시하여 조선사람들을 일체 총독통치에 개입시키지 않았다. 저들에게 나라를 팔아넘긴 리 완용, 권중현, 박제순을 비롯한 매국노들에 대해서도 명색이 《후작》이요, 《자작》이요하는 일본귀족의 작위와 《은사금》을 안겨주는데 그치였을뿐 식민지통치기구에는 개입조차 시 키지 않았다. 조선총독부기구의 고등관이나 판임관은 물론이고 지어 수위나 급사에 이르 기까지 자그마한 정치적권한이라도 행사할수 있는 직무들에는 모두 일본인들을 임명하였 으며 조선사람은 심부름군과 청소부 몇명밖에 없었다.

심지어 총독부산하의 철도, 통신, 건설관서 등 기술관계관청에도 조선사람이라면 절 대로 들여놓지 않았다.

이와 같은 조선인민의 정치적무권리상태는 무단통치시기만이 아니라 일제의 40여년 간에 걸친 식민지통치의 전기간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

그러나 일시적이지만 조선인민에 대한 기만적인 《참정권》문제가 론의의 대상으로 된 것은 1919년 3.1인민봉기가 일어난 이후였다.

문화통치시기 일제가 조선인민의 《참정권》실시에 대하여 떠들게 된것은 야만적인 무 단통치를 반대하여 일떠선 우리 인민의 거족적인 3.1인민봉기에 의하여 심대한 타격을 받은데 있었다.

3.1인민봉기는 일제의 중세기적공포정치로 말미암아 극도의 정치적무권리속에서 짓 밟혀온 조선인민의 쌓이고 쌓인 원한과 분노의 폭발이였다.

3.1인민봉기가 급속히 확대되는데 질겁한 일본의 일부 정객들과 지식인들속에서는 그 수습책으로 《참정권》문제를 론의에 올리게 되였다.

일본에서 조선인민의 《참정권》문제를 론의하게 된 목적은 우선 조선인민에게 그 어 떠 정치적자유와 권리를 주자고해서가 아니라 앙양된 우리 인민의 반일투쟁기세를 약화 시키고 얼려넘겨 3.1인민봉기를 하루빨리 진압하려는데 있었다.

당시 일본의 야당인 헌정회의 당수 가또 다까아끼는 1919년 4월 12일 후꾸시마에서 진행된 헌정회의 도호꾸대회에서 《조선의 소요사태는 심히 중대한것 같은데 …우선 초미 의 급선무에 대응하기 위해 병력을 사용하여 폭동을 진압하는것은 물론 필요할것이지만 그후에는 조선인으로 하여금 우리 나라의 통치에 설복시키게 할 수단을 강구하는것외에 다른 좋은 계책은 없을것이며 그리고 그 방법으로서는 결국 그들에게 자치를 허락하는것 외에는 없을것이다.》라고 하면서 조선의 자치문제를 들고나왔다.

여기서 이자는 또한 자치를 통하여 조선인이 《일본천황폐하의 적자로서 결코 종속적

관계로 취급하는것은 아니라는 관념》을 주어야 한다고 떠들었다.

가또가 들고나온 자치론은 본질에 있어서 3.1인민봉기로 하여 고조된 조선인민의 반일투쟁기세를 무마시키고 우리 인민을 일본의 식민지통치에 고분고분 순종하도록 하기위한 일시적인 기만술책에 불과한것이였다.

그후 3.1인민봉기가 진압되는 기미를 보이자 가또는 즉시 태도를 바꾸어 형식적인 자치권부여조차도 정면에서 반대하였다. 이해 7월에 헌정회의 간사이대회에서 이자는 앞서 도호꾸대회에서 제창하였던 조선에 대한 자치권부여의 의미에 대해 《독립은 …단순히무단정치로부터의 해방, 정치사상의 선도에 따라 일층 자유로이 조선인의 정치욕을 만족시켜주는데 적당한 방법을 강구해준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변명하였다. 이에 대해 당시 《오사까아사히신붕》은 《본인이 이러한 의미로 말하였다고 하는 이상 세간에서는 오해하고있었다고 할수밖에 없을것이다. 우리들은 그가 고심한 언어해석으로 세인의오해를 풀었다는것을 기뻐하므로 구래여 도호꾸대회의 연설속기를 가지고 추궁하는것과같은 나쁜 고집은 부리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이와 동시에 일본언론계에서도 조선에서의 《참정권》문제에 대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것이지만 언급하는것들이 있었다.

《도꾜아사히신붕》은 3.1인민봉기가 최고조기에 이르렀던 1919년 4월에 조선에 《참정권》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 론조는 심히 명백치 않은 추상론으로서 실지로는 참정권부여의 주장이 아니라 일시적인 회유책에 불과한것이였다.

《도꾜아사히신붕》은 조선에서의 《참정권》실시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물론 제국의회와 같은 구속력있는 결의기관을 설치하는것은 자못 중대하며 한편 시기상조라는 비난을 받을수 있지만 광범한 주민들의 희망을 받아들일수 있는 적당한 자 문기관을 권위있는 칙령의 형식에 의해 설치하는것과 같은것은 결코 시기상조가 아니며 또한 유해롭지 않다.》

이 신문에서 언급한 정도의 자문기관으로서는 1910년이후 이미 친일파들에 대한 우대기관으로서 존재한 중추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10년동안 한번도 소집된적이 없는 유명무실한것이였다.

그러나 《도꾜아사히신붕》은 이해 5월에 들어와 일본침략군의 증파로 3.1인민봉기가점차 하강하는 추세를 보이자 즉시 태도를 바꾸어 《참정권》부여를 반대하였다.

이상과 같이 3.1인민봉기가 한창 고조되였을 때 일본의 일부 정객들과 지식인들은 3.1인민봉기를 진압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리용하기 위해 기만적인 《참정권》문제를 들고나왔던것이다.

그 목적은 또한 제국주의자들이 저들의 식민지들에 《참정권》을 부여하여 식민지민족 해방투쟁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있던 당시의 실정에서 조선인친일주구들의 권세 욕을 리용하여 간악한 식민지통치를 미화분식하려는데 있었다.

근대시기 제국주의렬강들은 당시 저들이 가지고있던 식민지들에서 강점초기에는 일반적으로 《참정권》문제를 론의하지 않았다. 그것은 《참정권》을 부여하는 경우 식민지나라 인민들의 독립투쟁기운을 더욱 고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다고 우려하였기때문이였다.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이후에 사회주의10월혁명의 영향을 받은 식민지나라 인민들의 독립투쟁기세가 급속히 앙양되자 제국주의자들은 이를 무마시키고 식민지지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저들의 식민지들에서도 일정한 정도로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으면 안되 였다.

여기에서 한가지 명백히 할것은 어느 나라에서든지 식민지들에서의 《참정권》실시는 본질에 있어서 식민지종주국들의 통치를 유지하고 민족해방투쟁을 기만하기 위한 수단으로 리용되였지 결코 근로인민대중의 정치참가를 실현하기 위하여 실시되지 않았다는것이다.

이러한 흐름을 지켜보고있던 친일역적들은 일제통치층이 기만적인 《내지연장주의》를 부르짖자 거기에 환상을 가지고 일제에게 조선에도 《참정권》을 부여해달라고 애결해나섰 다. 이 시기 들고나온 《내지연장주의》로 말하면 3.1인민봉기에서 타격을 받은 일제가 그 에 대한 회유책으로서 내세우 교활한 식민지통치리론으로서 일본인들에게 실시하는 정치 를 조선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한다는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다시말하여 조선사람들에 대한 종전의 차별정책을 없애고 조선사람들을 일본인과 같이 동등하게 대우한다는것이였다.

1919년 4월에 일본수상 하라 다까시는 조선총독부 정무총감 야마가따 이사부로를 만나 그에게 조선에서의 사태가 평정될 때에는 조선총독을 문관본위제도로 고치며 교육 은 일본과 조선에서 동일한 방침을 취할것, 헌병제도를 고쳐 보통경찰제도로 할것 등 내 지(일본)의 연장으로서 조선을 동화하는것이 필요하다고 훈시하였다.

하라가 떠벌인 내지의 연장이란 곧 《내지연장주의》를 말하는것이였다.

그후 하라는 1919년 8월 새로 조선총독으로 취임한 사이또 마꼬또와 신임정무총감 미즈노 렌따로에게 자기의 대조선식민지지배정책을 밝힌 《조선통치사견》(조선통치에 대 한 개인적인 견해라는 뜻-인용자)을 비밀리에 주었는데 여기서 그는《내지연장주의》를 구체화하였다.

《조선통치사견》에서 이자는 1910년이후 조선의 통치제도는 대체로 대만을 모방하 였다고 하면서 《때문에 나의 소견에 의하면 조선에서도 내지에서도 완전히 동일한 제도 를 실시하는것이 좋다고 믿는다. 즉 행정상, 사법상, 군사상 기타 경제, 재정의 점에서도, 교육, 지도의 점에서도 완전히 동일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을 동일하게 하여 그리고 동 일한 결과를 얻을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수 있을것이다.》고 떠벌이였다.

하라가 《조선통치사견》에서 떠벌인 이 궤변은 조선사람들에게도 식민지적압제와 예 속이 아니라 그 어떤 정치적자유와 권리를 주는것처럼 온통 미사려구로 가득차있었다.

그러나 일제가 떠든 《내지연장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조선인민에 대한 정치를 일본 에서와 동일하게 한다는 명목밑에 우리 인민의 반일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한 교활한 식민 지통치리론이였다.

바로 이러한 속에서 1919년 8월 심천풍, 리기찬 등 친일관료출신들이 일본수상 하 라에게 자치제와 조선의회설치를 요구하였다가 거부당하였으며 그해 12월에는 다시 친 일분자인 선우순이 하라에게 동화정책과 자치를 요구하였다.

또한 1919년말부터 극악한 친일역적인 민원식이 《참정권》부여를 주장하고 다음해부 티는 년중행사처럼 청원운동놀음을 벌리였다.

친일분자들이 《참정권》부여를 주장한것은 철저히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인정하는 대 가로 일정한 권력을 넘겨받아 저들의 안일과 부귀영화만을 누리기 위한데 있었다.

그 추구하는 목적이 어떠하든지간에 《참정권》실시문제가 조선과 일본에서 일부 제기 되자 일제통치층은 그에 대한 립장을 명백히 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일본수상 하라 다까시는 1919년 8월에 발표한 담화에서 다음과 같이 떠벌이였다.

《…조선은 내지와 지리상관계에서 밀접할뿐만아니라 인종은 물론 풍격. 인정이 내지와 큰 차이가 없기때문에 내지인과 조선인은 모두 제국신민으로서 정사를 함에 있어서 차등 이 있을수 없을뿐만아니라 사회전반의 리유로부터 차이가 있을 까닭은 없다.》

이와 같이 하라가 조선인과 일본인사이에 차별이 없는것처럼 운운한것은 3.1인민봉기로 하여 혼란상태에 빠진 식민지통치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일시적인 기만술책에 지나지 않는것이였다. 당시 일본수상이였던 하라가 앞장에서 《내지연장주의》에 기초한 일본과 조선의 무차별을 떠든 이상 그 당시의 론리적귀결로서 《참정권》실시문제도 자연히제기되게 되였다.

그리하여 일제통치층은 심사숙고한 끝에 《참정권》의 제1형식인 제국의회에 조선인 의원이 참가하는것은 허용할수도 있지만 제2형식인 자치만은 절대로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고한 침략방침으로 정하였다.

3.1인민봉기때 일본정부가 작성한 앞으로의 대조선식민지지배정책이라고 할수 있는《조선통치방침》에는《① 조선의 독립을 허용하지 말것.② 조선인의 조선자치를 허용하지 말것.③ 조선에 지방자치를 인정할것.④ 장래 조선인을 제국의회 의원으로 할것.⑤ 재외조선인에 대한 보호취체의 방침을 세울것.⑥ 문명적행정을 진행할것.》이라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일제통치층이 조선에 자치를 주는것을 완강히 반대한것은 자치를 주는 경우 그것이 조선인민의 독립열의를 더욱 북돋아주게 될것이며 나중에는 독립에로 이어질수 있다고 우려하였기때문이였다. 또한 조선인을 제국의회 의원으로 하는것을 그 시기가 명백치 않 은 장래의 일로 모호하게 정한것도 결국은 조선사람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겠다 고 한것과 다름없는것이였다.

당시 일제의 고위충인물들이 조선에 자치를 주는것을 반대한 자료들을 대표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수상 하라 다까시는 《조선통치사견》에서 《내지연장주의》에 기초한 동화정책을 강조하면서 자치권부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반대하였다.

《…세간에는 조선에 자치를 허용해야 한다고 론하는자도 있어 우리 부, 현, 정, 촌제 가 보여준것과 같은 자치를 하려고 한다면 애당초 방해로 될것이 없다. 또한 그 자치의 경지에 도달할것을 희망한다고 하지만 유미제국의 신령토에서의 자치와 같은것을 실시하 려고 하는 론의가 조선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그 주의를 잘못한것이라는것은 이상의 론 지에 의해 리해할수 있을것이다. 또 조선이 자칫하면 독립을 기도할것이라는 위구심을 가지고 대조선정책을 세우려고 하는자가 있는데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항상 우리에게 반 항하며 독립을 기도할 생각을 가지게 하는것으로서 심히 어리석은 계책이다. 어떤 나라 에 있어서나 그 독립을 상실한 인민이 옛시절을 그리워하는것은 수세기를 거쳐서도 완전 히 없어지지 않을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통치하에서 행복, 안녕을 얻고 향상, 발전 하는 이상에는 그들에게 옛시절을 그리워하는 생각이 있다고 해도 이때문에 반역을 기도 하는것은 대체로 없을것이며 당초에 하두명의 불령무리들이 국민을 선동하면 부화뢰동 (일정한 주견이 없이 남의 의견을 덮어놓고 따른다는 뜻-인용자)하는자들이 다소 있을 것이다. 이때문에 판국이 혼란될 근심은 없을뿐아니라 우리 병력, 자원이 가령 폭동, 반 란이 일어난다고 해도 이것을 진압하는것은 애당초 쉬운 일이라고 믿는다.…자칫하면 독 립을 기도할것이라는 위구심을 버리고 또 종래의 외국의 제도를 모방하는 오유를 배척하 고 결국 조선을 내지에 동화할 방침으로서 제반의 제도를 쇄신하는것은 오늘날 가장 적 절하 조치이며 또 병합의 목적도 비로소 달성할수 있다고 믿는다.》

우의 자료를 통하여 알수 있는것처럼 하라는 유미제국주의나라들에서처럼 식민지의 회설치를 통한 자치권부여를 반대하는 립장이였다.

그렇기때문에 하라는 1919년 12월 친일분자인 선우순이 찾아와 자치와 조선의회의 개설을 주장하였을 때 자치는 절대로 불가능하며 장래 조선인을 일본의회에 참가시킬 작 정이므로 기다리라고 말하면서 자치론이 독립론에서 나왔다고 강하게 경계하였던것이다.

대신에 이자는 우리 인민의 반일투쟁기세를 무마시키기 위해 일본의 부, 현, 정, 촌 제와 같은 지방자치를 실시할것을 주장하였다.

교활한 일제는 《지방자치》라는 허울좋은 간판밑에 마치도 우리 인민들에게 식민지정 치에 참가할수 있다는 인상을 주어 반일의식을 거세말살하며 친일주구들의 권세욕도 일 정하게 만족시켜주어 식민지통치에 효과적으로 써먹으려고 책동하였던것이다.

또하 그를 통하여 기만적인 《내지연장주의》의 반동적정체를 어느 정도라도 감싸보려 고 하였던것이다.

3.1인민봉기를 야수적으로 진압하는데 앞장섰던 조선강점군사령관 우쯔노미야 다로 도 1919년 5월 륙군대신 다나까 기이찌의 요청으로 보낸 의견서에서 조선은 독립론, 분 리론(자치론을 념두에 둔것임-인용자)으로 발전할 우려가 있으므로 절대로《특종의 행 정관구》로 하여서는 안된다는것을 강조하고 《참정권》대신에 일본의 정, 촌제와 같은것을 주며 또한 동화의 방법으로서 일본인들의 조선에로의 이주를 장려할것을 제의하였다.

여기에서 우쯔노미야 다로가 말한 《특종의 행정관구》란 자치권이 부여된 조선을 말 하는것이며 이자는 이렇게 되면 조선인민의 독립사상이 영원히 보존되여 나라의 독립을 기도할수 있으므로 이것을 막자면 회유책으로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제의하 였다.

결국 이것은 조선인민이 독립정신을 보존할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도 허용하지 말아 야 하며 오직 일본에 합병된 상태에서의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여 스스로가 조선을 독립국 이 아니라 일본령토의 한 부분이라는것을 인정하고 그에 순응하게 하자는 술책이였다.

이와 함께 조선총독부 고등법원 검사 고꾸붕 산가이는 정부앞으로 보낸 의견서에서 자치론이 독립론으로 발전하는것은 필연적이므로 절대반대하며 성급한 동화정책을 경계 하게 하고 동화의 방법으로서 가장 좋은 방법이 혼인장려에 있다고 하였다.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이였던 미즈노 렌따로도 자치론이 독립론에서 나온것이라고 전 제하고 조선에 《참정권》을 주지 말아야 하는 리유로서 문화수준이 낮고 정치사상이 발전 하지 못한것을 들면서 다음과 같이 떠벌이였다.

《…조선인의 참정권에 대한 요구는 극히 치렬한것이였다. 조선인의 참정권이라는것 은 조선인에게 제국의회의 의원자격을 주고 제국의회에 대의사(중의원의원을 말함-인용 자)를 보내자고 하는 요구인것이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도리도 있어 적당한 시기에 고려 해야 한다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지만 조선의 사정은 문화수준이 매우 낮고 정치사상도 발전하지 못하였으므로 일약 조선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한다고 하는것은 조선인을 위해서 만이 아니라 또한 내지의 정치상에서도 상당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기때문에 이것은 별 문제로 하고 먼저 그전에 조선의 지방단체 즉 부, 면, 읍에 대한 자치를 허락하여 정치상 의 요구를 만족시켜주고 동시에 조선인으로 하여금 지방정치에 참가하게 하는 길을 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기때문이다.》

이것은 일제가 들고나온 《참정권》실시문제가 본질에 있어서 조선인민의 정치적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것이 아니라 일본의 식민지통치에 철저히 복종시키도록 하기 위한데 목적을 두고있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이와 같이 3.1인민봉기후 일제는 갑자기 등장한 《참정권》실시문제와 관련하여 조선에

자치를 주는것이 곧 독립에로 이어질수 있다는 위구심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이를 반대하는 립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교활한 일제는 이것을 전면에서 부정하지는 않고 조선에서 《내지연장주의》에 기초한 지방자치를 실시하는것으로 조선인민을 회유기만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들의 식민지통치를 더욱 강화하려고 획책하였다.

2. 3. 《참정권》실시를 위한 일제의 기만적인 책동

무엇보다도 일제는 친일주구들을 사촉하여 《참정권》을 요구하는 청원운동을 벌리도록 하여 조선인민의 열렬한 독립정신을 마비시키고 3.1인민봉기로 앙양된 조선인민의 반일투쟁기운을 다른데로 돌리려고 교활하게 책동하였다.

1920년초부터 1924년 중엽까지 친일파들은 일제의 사촉밑에 일본의회에서의 《참정권》청원운동을 년중행사처럼 벌려놓았다. 일제의 주도세밀한 계획에 따라 벌어진 이 청원운동놀음은 조선인민의 반일감정을 다른데로 돌리기 위한 정치선전용으로 리용되였다. 기만적인 청원운동의 건의자의 한 사람인 호소이 하지메는 1920년 7월 조선총독 사이또에게 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기하였다.

《조선인이 발기하게 하여 각 대표자들의 대회를 열게 하며 이 집회석상의 의견제기로서 조선의회개설을 청원하는 건을 자문하게 하고 실행위원을 선거하여 청원운동을 계속하게 하며 일체 민심을 〈의회개설운동〉에 집중하게 할 방침을 취하는것이(청원을 받아들이는가 아닌가 하는것은 스스로 별개의 정치적문제로 된다.) …분립한 여러 당파, 어수선한 민심을 〈조선의회〉개설이라는 한점에 집중시키는 하나의 정책으로 된다. 제목이 제목이니만큼 리상재일파의 극단한 독립파를 제외한 다른것들은 다 하나의 우산밑에 모이게 하고 청원운동을 될수록 장기간에 걸쳐 계속하게 하며 공명과 허위를 구하려고 하는 인물들을 위원으로 선거하고 무슨 회, 무슨 당대표라는 칭호밑에 도표 — 경성사이를 자주왕복하게 …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호소이의 견해를 분석해보면 조선의회라는것이 실지는 조선인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것이 아니라 명색이 의회라는것을 내오게 하여 독립을 요구하는 여러 대중단체들을 기만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리용하자는것이였다. 그러나 사이또는 《참정권》청원 운동을 벌리도록 하자는 호소이의 건의는 받아들이였지만 청원운동의 목표는 조선의회의 개설이 아니라 일본의회에서의 《참정권》을 줄것을 청원하는것으로 한정시켰다. 그것은 조선의회의 개설이 곧 자치를 의미하는것으로 인정될수 있었기때문이였다. 청원운동을 처음으로 시작한것은 친일주구단체인 국민협회였으며 여기에 동조한것은 극소수의 대지주, 예속자본가들이였다.

국민협회는 1920년 1월에 극악한 친일주구인 민원식이 조직한 친일주구단체였다. 이 친일주구단체는 당시 조선인민의 격렬한 반일투쟁기세에 대처하여 친일여론조성을 위해 조선총독부 경무국 사무관인 마루야마 쯔루기찌의 지원과 지시를 받아 조직되였다.

민원식은 일본수상 하라 다까시의 《내지연장주의》라는 새로운 동화정책에 적극 추종하여 《국민정신발양, 사상선도, 립헌사상 및 민권신장, 자치정신배양》이라는 반동적인 구호밑에 《신일본주의》라는 간판을 내걸고 친일여론조성에 광분하였다. 국민협회의 조종자인 마루야마는 이에 대해 《신일본주의라는것은 일선이 병합하여 신일본이 생겨났기때문에 오늘날 일본을 위한 조선이 아니며 조선을 위한 일본도 아니다. 량자의 합작에 의해

새로운 일본으로 되였기때문에 이 신일본은 두 민족의 공동의 책임과 의무에 의해 건설 되지 않으면 안된다. 조선인도 이 원리를 파악하고 분발하고 노력하여 신일본의 정치에 도 참가하고 신일본의 발전에도 기여하여야 한다. 신일본의 각료로도 참가하고 더 나아 가서 조선인이 총리대신으로도 되여 모든 책임을 질 각오가 되여있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면서 조선사람들에게도 마치 일본인과 꼭같은 정치적권리가 차례지는것처럼 떠들어댔다.

이러한 기만적인 구호를 든 민원식에 대하여 조선총독부는 국민협회의 기관지인《시 사신문》을 발행시켜 그것을 강매하도록 하는 하편 《참정권》청원운동이라는것을 매해 가 을에 일본의회에 《참정권》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하게 하였다.

일제는 《참정권》청원운동이라는 놀음을 다른 친일주구단체인 갑자구락부를 통해서도 벌러놓았다. 갑자구락부는 1924년 8월 친일주구들인 예종호, 조병담, 방규환 등이 조선 에 거주하고있으면서 일제의 식민지지배정책에 적극 협력하고있던 일본인들과 결탁하여 만든 친일주구단체였다.

이 친일주구단체는 《참정권부여, 주요도시의 자치, 교육제도의 완비, 보급금의 증액, 산업교통기관의 완비》를 표방하여 발족하였다.

당시 직업적인 친일분자들을 리용하 일제의 친일여론조성책동은 조선인민의 강하 배 격을 받아 아무러한 효과도 보지 못하고있었다. 게다가 이 시기 우리 나라에서는 로동운 동, 농민운동, 공산주의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여 일제의 식민지지배에 커다란 타격을 주 고있었다. 이로부터 일제는 조선인민의 이목을 《참정권》청원운동에로 더욱 쏠리게 하여 식민지지배체제의 유지, 강화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목적밑에 갑자구락부를 조직하였 던것이다.

일제의 지시를 받은 갑자구락부의 《참정권》청원운동이 얼마나 기만적이였는가 하는 것은 청원이 일본국회를 거치지 않았을뿐아니라 그 청원내용도 조선인민의 의사와는 완 전히 배치되는 날조된것이라는것을 통해서 잘 알수 있다.

일제의 조종밑에 이 친일주구단체는 국민협회와 경쟁적으로 청원운동을 벌리면서 우 리 인민의 반일투쟁기세를 약화시키고 민족주의운동내부를 분렬시키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청원운동놀음은 1924년에 일제가 《현재의 조선에 참정권을 부여할 의사는 없다.》라고 정식 언명한 후 중지되였다.

1924년경까지 광란적으로 벌어졌던 《참정권》청원운동은 우리 인민의 커다란 배격을 받았다. 그것은 1921년 2월 도꾜에서 애국청년인 량근환에 의해 민원식이 처단된 사실 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후날 일본인들자체가 《신일본주의》가 조선사 람들로부터 매국적인 사상, 운동으로서 배격을 받았다고 실토하였다.

또한 여러 신문들도 일찍부터 《참정권》청원운동의 허위성과 그 반민족적인 성격을 발가놓고있었다.

《시대일보》는 그것이 독립을 열망하는 민중의 애타는 념원과 배치되는것으로서 《무 엇보다도 일선량민족의 〈융화〉를 전제로 한것, …동시에 조선의 독자성의 말살을 출발점 으로 한것》이라고 규탄하였다.

그리고 《동아일보》는 《참정권》청원운동이 독립을 바라는 민중의 정신과 하늘땅차이 가 있는것으로서 일부 친일세력이 이와 같은 운동을 시도한 동기가 순결하다고 할수 없 다는것, 단지 그것이 조선을 미끼로 하여 사복을 채우는것을 그 진목적으로 한것이라고 하면서 친일역적들의 정체를 까밝혔다.

이와 같이 일제는 1920~1924년사이에 《참정권》청원운동을 식민지통치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선전용으로 리용하였으나 그것은 우리 인민의 커다란 배격을 받았으며 아무리 한 효과도 보지 못하였다.

다음으로 일제는 조선총독부안에 있는 중추원을 확장하고 거기에 일부 친일관료들을 끌어들여 조선인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듯이 가장해나섰다.

3.1인민봉기가 일어난 초기에 조선에서의 《참정권》실시를 떠들다가 인차 그것을 거부해나선 일제는 식민지의회를 세우거나 종주국의회에 식민지나라 의원들을 대표로 참가시키는 다른 제국주의나라들에서의 통치방법을 본따서 총독부의 소속기구인 중추원을 개편하는 방법을 고안해냈다.

그러나 중추원개편은 다른 제국주의나라들에서의 《참정권》실시와는 또 다른 그야말로 일제의 식민지통치에 자그마한 영향도 미칠수 없고 오히려 철저히 복종해야 하는 허수아비기구로 만드는데 지나지 않았다.

원래 중추원은 조선봉건정부의 통치기구체계에서 중요한 의정기구로 존재하고있었다.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한 후 일제는 조선봉건정부의 일체 관료기구들을 배제하고 해산하 면서도 중추원만은 명칭상으로나마 그대로 유지존속시켰으며 그것을 식민지통치기구인 조선총독부의 소속기구로 만들었다.

일제는 조선사람들이 중추원을 통하여 시정에 대한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고 떠벌이면서 마치도 조선인민의 의사를 참작하여 총독통치를 실시할듯이 떠들었다.

그러나 중추원은 그 어떤 정사를 보거나 그에 대한 의견을 제기하는 기관이 아니라 조선에서 일제가 실시하는 식민지정책수립과 집행에서의 편의를 도모해주는 노복에 불과 하였다.

일제는 중추원을 조작하면서 그 《관제》에서 《조선총독부 중추원은 조선총독에게 속하며 조선총독의 자문에 응한다. 조선총독은 중추원을 통하여 조선에서의 구관 및 제도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수 있다.》고 그의 어용자문적성격을 명백히 밝히였다.

조작초기 중추원에는 의장(총독부 정무총감), 부의장 1명, 고문 15명, 참의 20명, 부참의 35명이 배속되여있었다.

일제는 바로 이러한 어용자문기관에 불과한 중추원을 개편하면서 그것이 마치도 조 선사람들에 대한 참정권실시로 되는듯이 떠들어댔다.

1921년 개정에 따라 부참의는 모두 참의로 개칭되고 동시에 종전에 15명이였던 고 문은 5명으로 줄어들었으며 참의는 65명으로 늘어났다. 65명의 참의중에서 41명은 중앙 에서 선발되며 나머지 24명은 각 도지사들이 추천하는 인원으로 구성되였다.

의장을 제외한 중추원의 전체 관리는 철저히 친일매국노들이였다. 여기에는 일제의 조선강점과 강제합병에 발벗고나섰던 리완용, 송병준, 박제순, 리지용과 같은 특등매국노 들과 식민지통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해나선 친일적인 구시대관리, 지주, 자본가, 일본에 망명하였거나 일본류학경력을 가진자들이 들어갔다.

일제는 이러한 몇명 안되는 조선인친일주구들을 총독부의 중추원에 더 끌어들이고는 마치도 조선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존중하는듯이 떠벌이면서 식민지폭압통치의 본질을 가 리우려고 교활하게 책동하였다.

일제가 중추원에 끌어들인 일부 친일주구들의 관직을 부참의에서 참의로 올려주고 년봉급도 1 200원으로부터 3 000원으로 높인것은 본질에 있어서 《참정권》실시를 선전할 수 있는 그 어떤 변화를 보여주자는데 있었다. 중추원의 기만적본질은 구성에서뿐아니라 그 운영에서도 여실히 나타났다.

일제는 중추원을 조작한 후 1919년 9월까지는 단 한번의 회의도 진행하지 않았으며 그 이후부터 패망할 때까지 26차의 회의와 9차의 상담회만을 조직하였다.

회의나 상담회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고문이나 참의를 비롯한 조선인관리들은 의장의 승인밑에서만 발언을 할수 있었으며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이상 발언할수 없었다. 의제는 총독이나 의장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한정되며 그나마도 의장이 의사종결을 선 포한 후에는 누구도 발언할수 없게 되여있었다.

이러한 형편에 대하여 일제침략자들자체가 《중추원은 조선총독에 대한 단순한 자문 기관이였으며 …전면적으로 유명무실한 기관이였다.》고 고백하였다.

다음으로 일제는 지방통치제도를 개편한다고 하면서 마치 조선에서도 일본에서와 같 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것처럼 보여줌으로써 조선사람들에게 《참정권》이 부여되는듯이 위장해나섰다.

지방자치제도는 지방의 문제들을 지방주민들의 리익에 맞게 해결한다고 하는 자본주 의국가의 위선적인 통치제도로서 중앙권력기관의 지시와 명령을 《민의》라는 허울속에 감 추고 근로인민대중을 회유기만하기 위한것이다.

일제가 감행한 지방통치제도개편은 조선인민의 참정권을 실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반일의식을 마비시키고 식민지통치를 유지강화하기 위한것이였다.

즉 지난 시기 조선총독에게 장악되여있던 식민지통치권의 일부를 도지사나 부유. 군 수, 면장을 비롯한 지방행정관리들에게 나누어주어 지방에 대한 식민지통치를 더욱 강화 하기 위한것이였다.

일제가 지방제도개편을 통하여 조선에서의 《참정권》실시를 선전하기 위해 여러가지 법령들을 발포하였지만 그것은 형식에 불과한것이였다.

그에 의하면 도평의회는 도의 정치행정사무를 위한 기구인것이 아니라 도재정에 관 한 도지사의 자문기구였고 부협의회의 사명도 역시 이전 시기와 다름없이 부사무와 관련 한 부윤의 자문에 응하는것이였다.

면협의회는 면사무와 관련하여 면장의 자문에 응하며 그 내용은 면의 세출입예산을 정하거나 면내 주민들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부과금, 부역 등의 부과징수, 면구역의 변 동, 면재산의 처분에 관한것 등이였다.

지방통치제도개편을 통하여 인민들에게 부여된 정치적권리는 단 한가지도 없었다.

게다가 일제가 실시한 지방자치제도는 전조선적인 범위에서 실시된것이 아니라 일본 인과 조선인지주들이 밀집된 일부 지역들에서 선택적으로 실시되였다.

각 지방협의회의 의원《선거》가 진행되는 지역은 일본인과 조선인지주들이 집중되여 살고있던 지역인 12개의 부와 24개의 지정된 면에 한정되였다. 당시 전국의 총면수가 2 483개였는데 이것은 지정된 면의 수가 불과 100분의 1정도밖에 안된다는것을 말해주고 있다.

지정되는 면은 비교적 인구가 많고 대부분이 도, 부, 군소재지, 혹은 상공업이 발달 한 지방으로서 그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았다.

《지정면은 호수가 다수로 내지인이 거주하는것이 많은 시가지를 선정한다. 그 구비 하여야 할 자격표준은 ① 주로 상공업지로 공공시설을 필요로 하는것.② 호수가 1 500이 상으로 면안의 2분의 1이상이 한데 모여있는것, ③ 협의회원으로 선거할 권리를 가진자 가 수백명이상인것.④ 면부과금이 한 호에 평균 7원이상인 부담을 감당할수 있는것.》

지정면은 1925년부터 41개로 증가하였는데 추가한 17개 면은 충주, 천안, 정읍, 려수, 경주, 안동, 상주, 밀양, 동래, 사리원, 안주, 선천, 완주, 강계, 강릉, 철원, 북청 등이였다.

일제가 《선거》실시지역을 일본인들과 조선인지주들이 많이 있던 지역으로 제한한 목적은 자문기관을 저들의 의사에 무조건 복종하는 기관으로 만들기 위해 일본인들과 친일주구들로만 꾸리며 자문기관에서 일본인들이 확고한 우세를 차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특히 일본인유력자들이 많은 부협의회들에서는 완전히 일본인들의 독판치기무대로 되는 것이 지방자치제도를 통한 일제의 식민지통치에서 중요한 사항의 하나로 간주되였다.

대부분의 지역들에서 부협의회 회원으로 선거할 권리를 가진 일본인이 조선인에 비하여 수적으로 더 많았다. 그것은 일제가 조선사람들의 《선거》참가를 극력 제한하고 일본인수를 늘이자는 목적에서 선거할 권리를 가진자로 될수 있는 여러가지 자격들을 제시하였기때문이였다.

실례로 선거할 권리를 가지자면 일년에 학교비부과금 5원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당시 일본에서조차 선거할 권리를 가진자의 납세액한도는 3원이였던 조건에서 이것은 가난한 조선사람들로서는 감당할수 없는 엄청난 액수였다. 일제가 선거할 권리를 가진자의 납세액의 한도를 5원이상으로 한것은 조선인민의 비참한 생활처지를 리용하여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선거》에서 제외시켜 일본인들의 우세를 보장하기 위해서였다.

이처럼 일제가 벌려놓은 지방제도개편을 위한 《선거》놀음은 조선인민의 의사를 대변할수 있는 조선민족의 진정한 대표를 선거하기 위한것이 아니였다.

3. 결 론

세계식민지통치사를 돌이켜보면 제국주의자들은 식민지나라 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얼려넘기기 위하여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형식적이나마 정치참가를 허용하는 정책을 실시하는척 하였다.

그러나 우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일제는 조선사람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한다고 하면 서도 친일주구들에게조차 그 어떤 형식적인 권한도 부여하지 않았다.

일제는 조선에서의 그 어떤 형식적인 《자치》도 허용하지 않았으며 《지방자치제도》를 통하여 조선을 일본령토의 한 부분으로 더욱 고착시키고 조선인민을 저들의 노예로 치부 한 간악한 침략자였다.

40여년동안이나 조선을 강점하고 우리 민족에게 커다란 재난과 고통을 강요한 일제 침략자들은 이처럼 세계식민지통치력사에 찾아볼수 없는 간교하고 파렴치한 술책으로 조 선인민에게 정치적무권리와 노예적굴종을 강요한 강도의 무리이다.

우리 인민은 일제침략자들의 과거침략죄행에 대하여 절대로 잊지 않을것이며 피의 대가를 반드시 받아내고야말것이다.

실마리어 참정권, 청원운동, 지방통치제도